#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9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강준현·강훈식·김남근

김병주 • 박상혁 • 박선원

정태호 · 오기형 · 이기헌

한창민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제106조의2 및 제134조의6 신설).

### 법률 제 호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생계비계좌) ① 지역농협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하다)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지역농협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③ 지역농협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한다.
-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6조의2(생계비계좌) ① 지역축협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지역축협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 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③ 지역축협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4조의6(생계비계좌) ① 중앙회는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중앙회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

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③ 중앙회는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한다.
-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7조의3(생계비계좌) ① 지역농
	협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
	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
	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
	(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
	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
	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
	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
	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
	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
	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
	<u>설할 수 있다.</u>
	③ 지역농협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신 \_설>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 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 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06조의2(생계비계좌) ① 지역축협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

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지역축협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 설>

- ③ 지역축협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 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 로 송금하여야 한다.
-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34조이6(생게비계좌) ① 주와

제134조의6(생계비계좌) ① 중앙 회는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 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 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 (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 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

- <u>여</u>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 <u>할</u> 수 있다.
- ③ 중앙회는 생계비계좌에 최 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 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 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